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서-참조4)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

의안 번호	2004
----------	------

발의년월일 : 2008. 8.

발 의 자 : 남상욱 의원 등 9인

☐ 제안이유

-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상향 조정하여 결산검사의 내실을 기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위원의 일비 70,000원을 100,000원으로 상향조정(안 별표2)

성남시조례 제 호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성남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일비의 액수란중 “70,000원”을 “100,000원”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별표2 <table> <tr> <th>구분</th><th>액수</th></tr> <tr> <td>일비</td><td><u>70,000원</u></td></tr> </table>	구분	액수	일비	<u>70,000원</u>	별표2 <table> <tr> <th>구분</th><th>액수</th></tr> <tr> <td>일비</td><td><u>100,000원</u></td></tr> </table>	구분	액수	일비	<u>100,000원</u>
구분	액수								
일비	<u>70,000원</u>								
구분	액수								
일비	<u>100,000원</u>								

□ 검토의견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검사위원의 선임)의 규정에 의하면 결산검사위원 실비보상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은 없으며
- 성남시 2008년도 예산편성 세부지침중 위원회 참석수당 기준을 살펴보면 참석시간 2시간 초과시 100,000원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위원회 참석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어 결산검사위원의 일비를 100,000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결산검사의 내실을 기하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 됩니다.

□ 참고사항

○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134조(결산)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와 증빙서류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년도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생략)
- ③ 제1항의 감사위원의 선임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감사위원의 선임)

- ① 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의 수는 시·도의 경우에는 5인이상 10인이하,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에는 3인이상 5인이하로 하되, 그 정수·선임방법·운영 및 실비보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성남시 결산감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일비의 지급)

- 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위촉기간중에서 위원에게 일비를 지급한다. 다만, 시의회의 의원인 위원의 경우에는 지방의회의 회기와 중복되는 기간은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② 일비는 결산검사가 종료되는 날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13조(지급기준)

위원의 일비 또는 여비는 별표 2에 의하여 지급한다. 다만, 이 조례에 규정된 여비 지급기준외에는 공무원 여비규정에 준한다.

[별표2]

구 분	액 수
일 비	70,000원 [개정 2001. 06. 25]
여 비	국내여비규정 “별표2” 여비지급 구분표상 부시장 상당액

타 시·군 결산검사위원 일비 현황

구 분	결산검사 위원수(명)	일비(원)	비고
성 남 시	5	70,000	
수 원 시	3	100,000	
부 천 시	3~5	250,000	
고 양 시	3~5	100,000	
안 양 시	3~5	100,000	
군 포 시	3~5	100,000	
용 인 시	3~5	70,000	
안 산 시	3~5	70,000	
의 정부 시	3~5	70,000	
광 주 시	3~5	50,000	
의 왕 시	3~5	70,000	
이 천 시	3~5	70,000	